특약 변경 대비표

1. 약관명: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
2. 변경 시행일 : 2023년 07월 10일(월)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변경 내용: 우대금리 제공 조건 변경

<신구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교
제1조 적용범위 <생략>	제1조 적용범위 <좌동>	
제2조 가입대상 1.①~② <생략> ※ 주1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신설>	제2조 가입대상 1.①~② <좌동> ※주1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③~④ <생략> 2~5 <생략> <u>6. <신설></u> 제3조 신청 및 가입~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<좌동>	③~④ <좌동>2~5 <좌동>6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중을 소지한 사람에 한합니다.제3조 신청 및 가입~제4조 예금과목 및계약기간<좌동>	서민금융진흥원
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. <생략> 2. <신설> 제6조 이자 지급방법 <생략>	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. <좌동> 2.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은 당월(입금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에만 입금거래 정정(취소·변경 등)이 가능 합니다. 제6조 이자 지급방법 <좌동>	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제7조 우대금리 ~ <생략>	제7조 우대금리 ~ <화동>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제8조 세율의 적용 ~ 제9조 특별중도해지시 세율의 적용 <생략>	제8조 세율의 적용 ~ 제9조 특별중도해지시 세율의 적용 <좌동>	

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등

1 ~ 2 <생략>

1 ~ 2 \ 0 = 7					
개인소득		정부기여금			
총 급여 기 준	종합소득 <u>사업소득</u> 기 준	산정 기준금액	정부기여금 지급비율		
2,400만원 이하	1,600만원 이하	월 적금 납 입 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.0%		
<이하 생략>					

제11조 정부기여금의 개인소득 구간 산정

1. 제 10조 제 2항에 따른 <u>개인소득 구간은 <신설></u>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<<u>신설>에 따라 결정되며, 정부기여금 지급금액</u>은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<신설>

2.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은 가입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적용됩니다.

3.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 는 제5조에 따른 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.

제12조 재가입 등

1.<생략>

- 2. 중도해지(제 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) 후 재가입 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
-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 ⁵⁰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 (단,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)

※ 주8) "(계약기간 - 재가입 전 가입기간) / 계약기 간",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 을 개월 수로

환산한 기간(올림하여 환산)을 의미하며,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.

제13조 기타 <생략>

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등

1~2<좌동>

개인소득		정부기여금		
총 급여 기 준	종합소득 <u><삭제></u> 기 준	산정 기준금액	정부기여금 지급비율	
2,400만원 이하	1,600만원 이하	월 적금 납 입 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.0%	
<이하 좌둥>				

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
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

제11조 정부기여금의 <삭제> 산정

1. 제 10조 제 2항에 따른 <<u></u>삭제>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(총 5회)에 따라 결정되며, <<u></u> 식제> 대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^{주8)}됩니다. 단,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 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^{주8)}됩니다.

※ 주8) (예시) '23.7.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 여금 적용기간1년차('23.7.10~'24.7월), 2년차('24.8월~'25.7월), 3년차('25.8월~'26.7월),4년차('26.8월~'27.7월), 5년차('27.8월~'28.7.9)

2~3 <삭제>

주석번호 변경

제12조 재가입 등

1.<좌동>

2. 중도해지(제 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) 후 재가입 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 ^{줄의}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 (단,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)

※ 주9) "(계약기간 - 재가입 전 가입기간) / 계약 기간",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 간을 개월 수로

환산한 기간(올림하여 환산)을 의미하며,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.

제13조 기타 <작동>